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5. 26 선고 2021나21318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5. 26 선고 2021나213188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6. 23 선고 2019가단23190 판결

전문

원고(선정당사자), 항소인

A

원고보조참가인 B

피고, 피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재

변론종결 2022. 4. 28.

판결선고 2022. 5. 26.

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. 6. 23. 선고 2019가단23190 판결

주문

1. 원고(선정당사자)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, 나머지는 원고(선정당사자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2013. 1. 1.부터 원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 D, E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로 중 각 1/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원고(선정당사자), 선정자 D, E에게 각 1,800,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(선정당사자)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(선정당사자)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기현, 판사 윤영수, 판사 서동인

별지